



미국의 국유림 관리 법제

정보신청기관 :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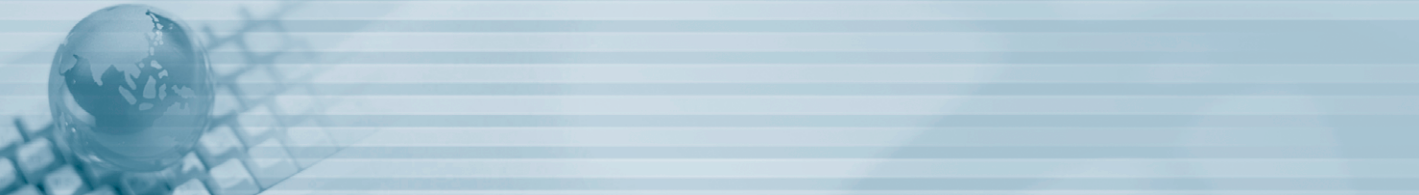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I. 머리말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래, 그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구체적인 정책지표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내놓음에 따라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추구에 있어서 새로운 기

술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바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작용을 통해 줄기와 토양 등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산림은 공기정화, 기온 및 강수량의 조절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목재를 비롯한 각종 임산물의 생산, 야생동물의 터전 및 국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으로도 기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법제도 지난 2001년 『산림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선진국가의 산림관리를 위



한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법제의 운용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하에서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국유림관련 법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국유림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유림 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Of 1976)』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미국의 국유림관련법제 개관

1905년 『이송법(Transfer Act)』에 의해 미국산림청(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USDA Forest Service; 이하 USFS)이 설립된 이래,¹⁾ 그 책무와 권한의 내용 및 한계를 규정하는 수백여개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또 일부는 개정되기도 했다. USFS는 이러한 법령들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이뤄지는 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978년부터 ‘산림청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선집(Selected Laws Affecting Forest Service Activities; 이하 SLFS)’을 간행하여 산림관련법제를 일괄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²⁾ 이하에서는 이 SLFS에 포함되어 있는 법제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유림 관련 법제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국유림의 의의

국유림(national forest)은 미국 내의 거대한 숲 지대로서, 연방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USFS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림은 미국의 영토내에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숲, 방목장 및 관련 토지로서 ①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부터 제외되었거나 혹은 회수된 모든 국유림, ② 매매, 교환, 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한 모든 국유림 지역, ③ 『뱅크헤드-존스 농장 임차법(the Bankhead-Jones Farm Tenant Act of 1937)』의 3장에 의해 관리되는 국유 초지 및 토지 이용 계획들,³⁾ ④ USFS에 의해 관리되는 기타의 토지, 수로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⁴⁾ 이러한 국유림의 관리는 목재 생산, 목축, 수자원, 야생동물의 보존 및 여가활동에 주안점이 주어지며, 국립공원(national park)과는 달리 상업적인 활용도 가능하며, 많은 경우에는 장려되기도 한다.



- 1) USFS 설립이전에 국유림의 관리는 1876년 의회가 미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설치한 특별부서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부서는 1901년 산림국(Bureau of Forestry)으로 개명되었다가, 1905년의 USFS에 이르게 된다.
- 2) 이 자료는 산림청의 활동과 관련한 법제들의 개관이 주목적인 까닭에 사법(private law) 분야의 산림관련 법제는 제외한, 공법(public law) 분야의 법령만을 담고 있다. 비록 산림관련법제에 대한 완전한 법령의 목록은 못되었지만, 산림청의 활동에 적용되는 ‘현재의 주요한(current major laws)’ 법령들의 목록과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4년 간행된 제4판이 최신판이다. 이 자료의 전문은 <http://www.fs.fed.us/publications/laws/selected-laws.pdf> (2008-09-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7 U.S.C.A. §§ 1010 이하; 36 C.F.R. §§ 213.1 이하.
- 4) 16 U.S.C.A. § 1609.

2. 국유림설치의 근거

국유림 설치의 근거 법제로는 1891년의 『지역개정법(Land Revision Act of 1891)』⁵⁾ 혹은 『산림보존지역법(Forest Reserve Act of 1891)』⁶⁾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SLFS는 1897년의 『유기체관리법(Organic Administration Act)』⁷⁾과 1907년은 『이송법(Transfer Act)』⁸⁾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전자는 대통령에게 국유림의 설정, 조정 및 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유림 조성의 목적, 거주민에 의한 목재나 석재 이용, 국유림의 보호 등 국유림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후자는 미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장관에게 공공 지역(public land)에 관련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가능케 하면서, 국유림에의 거주, 거주시설의 임차 및 국유림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3. 산림청관할지역 기초법제

산림청관할지역(Forest Service land)에 대한 USFS가 관할권 역시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의 부적합한 부분을 수정하고, 토양침식, 재식림(再植林), 천연자원의 보존 및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1937년의 『뱅크헤드-존스 농장임차법』⁹⁾을 중심으로, 토지와 수자원의 보호를 위한 기금 및 연방의 토지 취득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가능케 한 1964년의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법(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 Act)』¹⁰⁾ 각 주(state)의 삼림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항해가능한 수로의 항해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로변의 취득을 통한 국유림의 조성을 가능하게 한 『위크법(Weeks Law, 1911)』¹¹⁾ 국유림의 교환가능성을 규정한 『시스크법(Sisk Act, 1967)』¹²⁾ 및 『일반 거래 법(General Exchange Act, 1922)』¹³⁾ 등이 있다.

4. 산림청관할지역의 관리계획관련 법제

USFS의 관할지역의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역시 여러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5) Wikipedia contributors, "United States National Forest,"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United_States_National_Forest&oldid=223484416 (accessed September 5, 2008).

6) <http://www.fs.fed.us/aboutus/history/> (accessed September 5, 2008).

7) 16 U.S.C. 473 to 475, 477, 551, 473, 478 to 482, 424, 430g.

8) 16 U.S.C. 472, 478, 495, 551, 554a, 615b, 554, 524.

9) 7 U.S.C. 1000, 12 U.S.C. 84, 371, 7 U.S.C. 1010 to 1012, 1013a.

10) 16 U.S.C. 460l-4 note, 460l-4, 460l-5, 460d, 460l-6, 460l-6a, 460l-7 to 460l-10, 460l-10a to 460l-10d, 460l-11, 23 U.S.C. 120 note.

11) 16 U.S.C. 552, 563, 515, 516, 517, 517a, 518, 519, 521, 480, 500.

12) 16 U.S.C. 484a.

13) 16 U.S.C. 485, 486.



법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양한 용도의 임산물과 서비스의 생산 및 그 생산량의 적절한 제한을 위한 국유림의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1960년의 『다용도 제한산출법(The Multiple Use Sustained Yield Act of 1960)』과 공공지의 관리, 보호, 개발 및 증진을 위한 공공지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1974년의 『숲과 초지의 재활용 자원 계획법(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¹⁴⁾에 이어서, 이 두 법률들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면서 USFS의 국유림 관리기능을 재구성·확장하여 오늘날 국유림 관리의 가장 중요한 법률로 꼽히는 『국유림 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Of 1976)』¹⁵⁾이 있으며, 그 밖에도 『국립 인디언 산림자원 관리 법(National Indian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ct, 1990)』¹⁶⁾ 등이 있다.

5. 국유림의 자원 관리

국유림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포괄적 지출 및 긴급상황 대처용 지출 법안(Omnibus Consolidated and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of 1999, Stewardship End Result Contracting Projects)』¹⁷⁾과 『건강한 숲 회복 법안(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 of 2003)』¹⁸⁾과 같은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제들과 그 외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법제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국유림의 문화적 활용과 관련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미국의 유물 보존법(Preservation of American Antiquities, 1906)』,¹⁹⁾ 『국립 역사 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966)』,²⁰⁾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의 보존법(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Archeological Data, 1974)』²¹⁾ 및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1979)』²²⁾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국유림의 광물자원 및 채굴관련 법제, 초지 관리, 여가활용을



14) 16 U.S.C. 1600 note, 1600 to 1614.

15) 16 U.S.C. 472a, 521b, 1600, 1611 to 1614. 16 U.S.C. 472a는 특히 『국유림 관리 정책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Policy Act of 1976)』으로 불리기도 한다.

16) 25 U.S.C. 415, 3101 note, 3101 to 3120.

17) 16 U.S.C. 2104 note.

18) 16 U.S.C. §§ 2103b, 6501, 6502, 6511 to 6518, 6531, 6541, 6542, 6551 to 6556, 6571 to 6578, 6591.

19) 16 U.S.C. 433, 431, 432.

20) 16 U.S.C. 470, 470-1, 470a to 470h, 470h-1 to 470h-5, 470i to 470v, 470w to 470w-6, 470x, 470x-1 to 470x-6.

21) 16 U.S.C. 469, 469a, 469a-1 to 496a-3, 469b, 469c.

22) 16 U.S.C. 470aa note, 470aa to 470mm.

위한 관리, 목재 관리, 야생동물 보존 관련 법제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6. 기타 국유림 관련법제

그 밖에 국유림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률로는 우선 수자원 관련 법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수 용수 공급법(Domestic Water Supply, 1940)』,²³⁾ 『수변 보호 및 홍수 방지법(Watershed Protection and Flood Prevention Act, 1954)』,²⁴⁾ 『연방 수자원계획 재조정법(Federal Water Project Recreation Act, 1965)』²⁵⁾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농가 대출법(Agricultural Credit Act, 1978)』²⁶⁾에도 홍수방지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삼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청과 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들도 있는데, 『그레인저-타이 법(Granger-Thye Act, 1950)』,²⁷⁾ 『청년자연보호단법(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²⁸⁾ 『국유림의 자원봉사자법(Volun-

teers in the National Forests Act of 1972)』,²⁹⁾ 『국유림 재단법(National Forest Foundation Act, 1990)』³⁰⁾ 및 『시골 학교들과 공동체들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법(Secure Rural Schools and Community Self-Determination Act of 2000)』³¹⁾ 등이 있다.

산림지역의 교통로관련 법제들은 기본적으로 산림고속도로(Forest Highways) 규정이 USC 23장(title 2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지표 교통 확장법(The Surface Transportation Extension Act of 2003)』³²⁾과 『국유림 도로 및 철로법(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1964)』³³⁾ 등이 마련되어 있다.

III. 국유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of 1976)

산림청을 규율하는 여러 법제 중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다용도 제한산출법(Multiple Use



23) 16 U.S.C. 552b to 552d.

24) 16 U.S.C. 1001 to 1003, 1003a, 1004 to 1006, 33 U.S.C. 701b, 701b note, 16 U.S.C. 1006a, 1006b, 1007, 1001 note, 1008, 1010.

25) 16 U.S.C. 4601-12 to 4601-17, 662, 4601-18 to 4601-21, 4601-5, 4601-12 note.

26) 16 U.S.C. 2203.

27) 16 U.S.C. 571c, 504, 580c, 579a, 572, 490, 580d, 580e, 504a, 580f, 580g, 580h, 555, 580i, 557, 580j, 500, 580k, 580l, 581i-1.

28) 16 U.S.C. 1701 to 1706.

29) 16 U.S.C. 558a to 558d, 558a note.

30) 16 U.S.C. 583j note, 583j to 583j-8.

31) 16 U.S.C. 500 note.

32) 23 U.S.C. 101.

33) 16 U.S.C. 532 to 538.



Sustained Yield Act)』『국유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이하 NFMA)』『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산림지원협력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숲과 초지의 재활용자원 계획법(Forest and Rangelands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등이 꼽히는 바,³⁴⁾ 여기에서는 국유림 관리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NFMA)』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혁

국유림의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1891년 산림보존지역(public reserves)의 설치로 시작된 국유림 보호 정책은 1897년 산림관리를 위한 재단설립 및 목재생산과 수자원관리를 주목적으로 산림보존지역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느슨한 지침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몇 년 뒤,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USFS가 공식 연방 기관으로 이러한 산림보존지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본래의 임무였던 소방, 재식림, 풍화작용의 조절 및 민간 보존 단체들과의 협력 작업들을 수행하

면서, 특히 2차대전 이후의 목재생산 수요에 대응한 산업적인 목재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렇지만 의회는 이러한 USFS의 목재생산에 주안점을 둔 활동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1960년에 여가활용, 야생동물 보호, 초지의 보존 등도 목재생산 및 수자원보호에 못지않은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USFS는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목재생산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공공의 불만이 초래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이러한 USFS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자, 의회는 1976년 NFMA를 제정하게 되었다.³⁵⁾

결국, 이 NFMA는 국유림 지역의 재생가능한 자원들의 관리를 규율하는 『Forest and Rangelands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1974년)』을 재구성, 확장하면서 일부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산림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다용도, 제한산출법(The Multiple Use Sustained Yield Act of 1960)』의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계획수립, 개개의 국유림 지역에 적절한 개별적인 자원관리 계획의 보충을 요구하면서, 국유림 관리의 가장 중요한 법률로 자리매김하였다.



34) Wikipedia contributors,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United_States_Forest_Service&oldid=230768090 (accessed September 5, 2008).

35) Rebecca K. Smith, "Our National Forests as Carbon Sink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ge in Management Emphasis," 『29 Pub. Land & Resources L. Rev. 183』(2008),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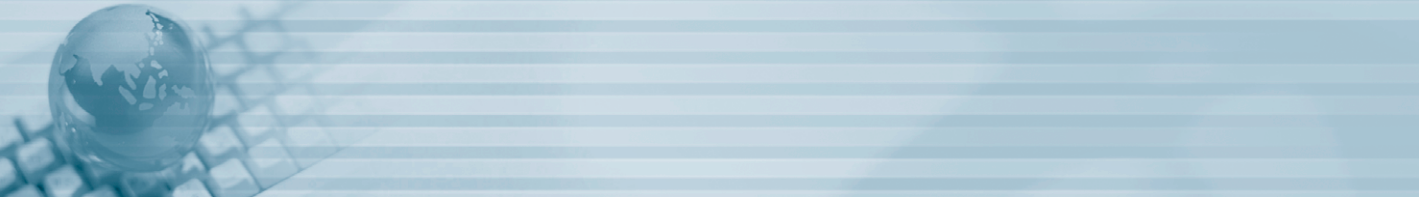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2. 구성

NFMA는 다음과 같은 21개의 조(s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내용

NFMA에는 여가활용, 야생동물 보호, 초지의 보존 등도 목재생산 및 수자원보호에 못지않은

- Sec. 1. Title(제목)
- Sec. 2. Findings(선언)
- Sec. 3. Reports on Fiber Potential, Wood Utilization by Mills, Wood Wastes and Wood Product Recycling(잠재적 섬유수확량, 제재소의 목재 이용, 목재 소비 및 목재재생에 관한 보고서)
- Sec. 4. Reforestation(재식림)
- Sec. 5. Renewable Resource Program(재활용 자원 계획)
- Sec. 6. National Forest System Resource Planning(국유림 자원 계획)
- Sec. 7. National Participation(국가적 참여)
- Sec. 8. Transportation System(운송 체제)
- Sec. 9. National Forest System(국유림 체제)
- Sec. 10. Renewable Resources(재활용 자원)
- Sec. 11, 13. Limitations on Timber Removal(벌목의 제한)
- Sec. 14. Public Participation and Advisory Boards(공공 참여와 자문위원회)
- Sec. 15, 16. Regulations and Severability
- Sec. 12. Conforming Amendments to the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숲과 초지의 재활용 자원 계획 법과의 조화)
- Sec. 13. Amendment to the Organic Act(유기체 법의 개정)
- Sec. 14. Timber Sales on National Forest System Lands(국유림 지역의 목재판매)
- Sec. 15. Validation of Timber Sales Contracts(목재판매 계약의 인가)
- Sec. 16. Payments to States for Schools and Roads(학교와 도로에 대한 주에의 보상)
- Sec. 17. Acquisition of National Forest System Lands(국유림 지대의 취득)
- Sec. 18. Amendment to the Knutson-Vandenberg Act(넛손-반덴버그 법의 개정)
- Sec. 19. Amendment to the Act of June 12, 1960(1960년 6월 12일 법의 개정)
- Sec. 20. Plan for Control of Dutch Elm Diseases (네덜란드느릅나무병의 방지 계획)
- Sec. 21. Severability(분리취급)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의회의 선언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다양성 및 토양의 질에 대한 관리가 추가되었고, 아울러, 국유림에 관한 관리 결정은 『국립 환경 정책 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의 절차적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ection 2 참조). 의회는 1970년, 연방 기관들로 하여금 기관의 계획된 행위들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NEPA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NEPA는 연방기관들이 자신들의 의도된 행위들이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하여, “인간의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연방의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환경영향지침(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에 따른 진지한 고찰(hard look)을 수행하도록 요청한다.³⁶⁾

한편 NFMA의 필요성이 국가의 산림자원의 소비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고, 산림의 다양한 사용의 보장이 영속적인 차원에서 유용함과 마찬가지로, 공중(the public)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치에 의해 산림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함에 있어 과학적인 산림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는 산림관리에 과학적인 접근을 요구하였다(section 6. (h) 등 참조). 비록 이러한 요구가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

타나지는 못했지만, 의회는 산림청이 요청받은 특정한 관리가 과학적인 지식에 따라 운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NFMA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재생산의 인허가 지침들 역시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론의 적용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게 되어 있다.³⁷⁾

IV. 맺음말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미국의 산림관련 법제는 목재생산 및 수자원 보호라는 기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여가활용, 야생동물 보호, 초지의 보존 등에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산림의 관리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면서 아울러 그 결과의 도출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해서 한순간에도 수십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



36) Rebecca K. Smith, 앞의 글, p. 186.

37) Erin Madden, “Seeing the Science for the Trees: Employing Daubert Standards to assess the Adequacy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Under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18 J. Envtl. L. & Litig. 321』(2003), p. 322.

이 따른다.

우리 법제 역시 2001년 제정·시행된 『산림기본법』에 따르면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산림의 관리의 목표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조 참조).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제와 그에 적절한 권한부

여가 필수적인 것인 바, 이미 오랜 기간 산림관리를 수행해 온 선진국가의 경험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산림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 주 영

(외국법제조사위원, 서울대 BK21 박사후과정연구원)